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비한 건축사 손해보험 개선 연구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A Study on Improving Architect Property Insurance for Safety Accidents of Building

Kim, Myeongsoo*

*Department of Economic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operating condition and the problems of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property insurance) for qualified architect and derived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he Certified Architects Act requires all 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to buy property insurance. This study proposes following suggestions to solve problems of current architect property insurance. Firstly, we need to increase the insurance purchasing rate of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for qualified architect. It is necessary to clearly specify the matters concerning the submission of insurance policies by the architects, which is currently carried out by the Minister's official letter, in the form of official announcement. Secondly, proper insured amount should be adjusted. In order to insured substantial compensation capacity, total amount of insurance should be enlarged. Thirdly, the insurance period should be extended to one year after completion of building to allow compensation for accidents due to design negligence. Generally, the design defect can mostly be identified within one year after completion. Fourthly, insurance coverage should be extended. In the long run, it is essential to enlarge the scope of the security not only to property damage but also to human losses. Finally, an accident record shar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mong insurance companies, so that proper insurance premiums or discounts can be made based on the system.

Keywords : Architect Property Insurance, Insurance Purchasing Rate, Adjust Insured Amount, Insured Scop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건축물의 붕괴·화재 등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부실 설계, 시공 관행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방안으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사전에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후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여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건설관련보험은 크게 시공부문과 용역부

문 손해배상보험으로 분류된다. 시공부문 손해배상보험은 200억 이상 PQ 및 대형 공공공사만을 의무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설계, 감리 등 용역부문 손해배상보험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해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의무화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민간공사까지 포함한 모든 건축물 공사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시키고 있다(Kim, 2014). 전자의 두 법규는 도로, 철도, 항만 등 토목구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건축사법 제20조 2항에서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 보험제도는 공사의 착공에서 완공까지의 사고를 대상으로 하므로 공사완공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적절한 손해보전 대책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보험가입액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

* Corresponding author: Kim, Myeongsoo, Department of Economic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
E-mail: mskimcuk@catholic.ac.kr
Received August 8, 2018; revised September 20, 2018
accepted September 20, 2018

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건축사 손해배상보험 개선의 당위성을 사례분석 및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나아가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방안도 도출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건설 관련 보험의 선행 연구는 많지 않다. Song and Choi (2001)는 공사보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보험요율과 보험금 납입방법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Song and Lee (2003)는 빠른 피해복구와 적정수준의 손해보상을 위해 CM배상책임보험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는 공공건설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법적 책임소재 및 책임배분을 가리기 위해 기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여 이를 절약하기 위함이다. Jo (2003)는 현행의 공공건설사업 수급인의 불완전 이행 및 하자 책임관련 학술 및 입법 사례를 분석하였다.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책임의 성질, 하차책임의 실태와 국내 공공 건설사업에 대한 계약이행 중의 불완전이행과 목적물인수 후 하자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설계용역에 대한 하자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전문책임보험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Park (2005)은 해상시설물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개선방안과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Lee (2010)는 국내 건설공사보험체계에서 대형공사에만 해당하는 보험 가입 의무화와 높은 보험요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험 가입 대상 공사의 기준 완화와 그에 따른 보험료 인하, 할인·할증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Lee and Choi (2011)에서는 현행 공사보험제도의 정책적 대안으로 신용평가에 근거를 둔 보증한도의 조정, 비효율적인 연대보증인 제도의 폐지, 제3자 인적손해의 담보범위 포함과 보험가입 금액의 상향, 보험기간의 연장 및 기타 제도정비사항이 제시되었다. Kim (2014)은 시공부문에서의 손해배상책임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의무 보험 가입 대상 공사 확대의 당위성을 도출하고, 가입 대상 공사 확대에 따른 정부의 추가적인 예산액 소요 규모를 추정한 바 있다.

Park (2006)과 Yeo (2010)는 비교적 선진적 건축보험제도를 가진 프랑스의 강제건축책임보험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용역부문(설계·감리) 손해배상보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시공 부문 건설공사보험의 개선과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

만 건축사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는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몇몇 연구가 있을 뿐이다. 그나마 이 연구들은 2011년 건축사법에 건축사 손해배상이 규정되기 전에 수행된 것으로, 이후에는 학술적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들어 특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여건 속에서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건축업은 다층적인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어 건축과정에서의 리스크가 큰 편이다. 건축사무소는 전문업이라는 특징을 가진 건설용역업이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영세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건설 관련 공사보험 가운데 건축사보험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건축법에서는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에 대해 건축사 손해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사 손해배상보험 개선의 당위성을 도출하기 위해 기본적인 통계와 공사보험가입 사례 등을 이용하였다. 통계청의 통계자료, 보험개발원, 건축사 공제조합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와 건축사공제조합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였다. 통계청에서 건축사 사업자 실태, 매출액, 건축사 공제조합에서 손해배상공제 실적 등을 참고하였다.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해서는 건축사 공제조합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관련 공제조합, 손해보험 회사, 보험개발원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기본적 자료와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여 기본 틀을 잡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주요 문제점과 이슈, 개선방향 등을 점검한 뒤, 기본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심층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2. 건축사 손해배상보험 도입 및 운용실태

2.1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역할과 필요성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은 공공공사 관련 부실설계 및 부실감리 예방, 설계·감리 업체 보호, 발주청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실설계 및 부실감리 예방으로, 이는 보험제도의 시행 및 보험료 납입으로 부실설계 및 부실감리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서 업계 전반의 부실율을 낮추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발주청의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설계 및 감리 등 용역업자의 낮은 손해배상 능력에 대비하여 발주자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설계·감리 업체를 보호한다. 설계 및 감리 등 용역업자의 경우 회사 규모의 영세성으로 취약한 자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고발생시 설계·감리 업체의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부도)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해당 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2 관련 규정

건설분야 설계·감리 손해배상공제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분야 손해배상공제는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건축사의 설계·감리 손해배상공제는 건축사법에서 정하고 있다.

먼저 설계·감리 손해보상은 1998년 구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보증형태로 처음 도입되어 운영되었다. 이후 2002년 1월 건설분야의 설계·감리에 대한 손해보험 형태로 바뀌어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제 76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17조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 업무요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감리, 검측관리, 책임감리, 건설사업관리가 가입대상이다.

이를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에서는 2011년부터 엔지니어링사업 모든 15개 부문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 제31조,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공제) 업무처리요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보통신, 전기, 건설, 환경, 원자력등 15개 엔지니어링 기술분야에 대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연구, 기획,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를 제외한 모든 엔지니어링활동이 가입대상이다.

마지막으로 2011년 건축사법 상 설계·감리 용역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다. 건설기술진흥법이 토목부문 관련, 엔지니어링진흥법이 토목을 포함한 엔지니어링 부문 관련 설계 감리 용역의 손해배상보험 제도를 규정하는데 반해, 건축사법은 건축물 관련 손해배상보험을 규정하고 있다.

2.3 손해배상보험 운영 실적

건축사법 제20조의 2항에서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19조의3 제1항에 의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용역 건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비용을 용역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사법 시행

령21조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손해배상보험(공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입기간은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임
- 가입대상은 건축물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을 대상으로 함
- 가입금액은 건축물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 계약의 계약금액을 한도로 함
- 부분 대상은 법률상으로는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은 제3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담보하고 있음
- 운영 기관은 건축사 공제 조합과 일반 손해보험사

건축사공제조합의 보험 발급 건수 및 납입공제료는 2011년 첫 해에는 실적이 저조하였다. 하지만 2011년 말에 국토부 장관 명의로 지방자치기관에 건축신고 시 보험증권을 징구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면서 2012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계약건수는 2012년 42,548건에서 2015년에는 86,334건으로 2배 확대되었고, 납입보험료는 2012년 2,118백만원 수준에서 2015년 5,493백만원으로 2.6배로 확대되었다.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총 보험가입건수는 267천건이며 납입보험료는 152억원이었다.

공제 구분별로는 실시설계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순이다. 기타 책임감리, 건설사업관리, 계획·중간설계 등은 1% 미만의 미미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상주감리, 책임감리, 건설사업관리는 계약건수는 적은 반면 건당 납입보험료는 큰 특성을 보이고 있다<Table 1>.

Table 1. Record of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insurance by deduction cases

Year	Deduction cases	Plan & Intermediate design	Working design	Transient supervision	Residential design	Responsible supervision	Industry administration	Sum
11	Cases	11	4,053	2,436	92	3	0	6,596
	Deduction	1	289	38	29	1	0	360
12	Cases	80	25,214	16,641	608	1	4	42,548
	Deduction	9	1,599	282	225	0.474	3	2,118
13	Cases	111	35,792	23,016	980	10	10	59,919
	Deduction	14	2,410	426	313	19	6	3,189
14	Cases	118	43,135	27,233	1,253	9	14	71,762
	Deduction	17	3,089	521	387	19	10	4,045
15	Cases	171	52,043	32,277	1,793	16	34	86,334
	Deduction	22	4,126	635	632	58	18	5,493
Average deduction per case		0.135	0.072	0.019	0.336	2	0.625	0.057

* Unit: number of times, million Won, %
 * Source: Certified architects financial cooperative

3.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제도의 문제점

3.1 보험제도 개선의 당위성

3.1.1 영세한 규모와 저조한 보험가입률

건축사법은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건축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하지만 미가입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건축사는 1인사무소로 운영중이며, 2014년 기준 사업체당 매출액은 534백만원으로 타업종에 비해 영세한 실정이다.¹⁾ 이로 인해 보험료를 자력으로 부담하는 것이 큰 비용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아직 보험으로 인한 혜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경향이 높다. 이는 보험을 통한 사고대비 및 책임의식 제고 등의 제도 취지에 역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시행령 일부개정 알림(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8203호, 2011. 9. 5) 공문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발송하여 “건축허가 시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확인”을 요청한 바 있다. 그 후 보험가입 건수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절반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보험가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건축신고 건은 30만 건 이상이지만, 보험가입 건수는 건축사공제조합 계약건수 86,000건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건을 모두 합계하더라도 15만 건 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Table 2>.

Table 2. Architect insurance by year

Year	Cases	Deduction payment	Accidents	Deduction provision
2011	6,595	360	0	
2012	42,548	2,118	2	19
2013	59,919	3,189	16	119
2014	71,762	4,045	20	157
2015	86,334	5,493	32	604

* Unit: number of times, million Won, %)

* Source: Certified architects financial cooperative)

3.1.2 보상한도가 '설계·용역금액'으로 한정

현행 건축사손해배상보험(공제)은 '용역금액'을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으로 하고 있다. 현행 보험가입금액은 구 건설기술관리법상 용역손해배상 보증상품의 가입금액을 용역금액으로 한정하였고, 이후 용역손해배상 공제제도로

전환 후에도 그대로 이어진 것(이는 발주청의 예산부담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임)이 현행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배상책임보험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민사상의 과실·책임 원리에 의한 건축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범위는 용역목적물가액(시설물가액) 전체금액에 미칠 수 있다. 심지어 설계, 시공비를 훨씬 초과하는 보수공사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용역대가는 통상적으로 설계는 공사금액의 3%이고, 감리의 경우 5% 이하로 보험가입금액이 용역목적물 전체가액에 크게 미달하여 보험제도의 효용성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3.1.3 착공일에서 완공일까지만 사고 보상

현행 법령에 따르면 보험(공제)가입 기간이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설정·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공사 완공 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공사 완공 후에도 설계 등의 하자로 인한 건축물의 하자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규정은 문제가 있다.

설계와 관련한 타 법규의 사례를 살펴보면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의 상품은 관련법에 의해 완공 후 1년까지를 보험 가입 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여타의 경우는 완공시점까지만 보험 기간으로 하고 있다. 다만 완공 후라도 90일 이내에 공사 중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Table 3>.

Table 3. Related legislations

Act	Contents
Electric technology management act	From beginning date to completion date of construction of power facilities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From beginning date to 1 year after completion of construction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Certified Architects Act	From beginning date to completion date of construction

3.1.4 담보범위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로 한정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에 한해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약관상으로는 '용역목적물 및 제3자의 재산상 손해'를 담보범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고 법무법인의 해석을 근거로 실무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사업체당 매출액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629백만원,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이 1,117백만원,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1,684백만원으로 모두 높게 나타남.

그리고 제3자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3자의 인적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인적 사고 발생 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등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인적 손해를 담보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여기서 제3자의 범위는 용역업자와 그 근로자, 하수급인을 제외한 자이다.

3.1.5 보험료 할증 등 페널티 시스템 부재

현행제도는 건축사는 과거 건설공사의 부실설계로 인한 사고 발생 이력이 있더라도 보험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으로 과거손해율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할인되거나 할증되고 있다.

$$\text{손해율} = \frac{(\text{지급보험금} + \text{미결 클레임에 대한 지급준비금})}{\text{보험료}}$$

보험이력이 오래 되고 보험가입 대상자가 많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이력을 보험개발원 주관으로 전 보험사가 공유하는 체계를 통하여 개별적인 사고이력을 보험료 요율 할증 할인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축사배상책임공제의 설계, 감리 공제 상품은 취급기관이 손해보험사와 공제기관(건축사공제, 엔지니어링공제 등)으로 다분화 되어 있고, 개별업체에 대한 과거 사고실적이 공유되지 않은 상태로 보험료의 할인 및 할증이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3.2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사례 1: 아산배방 운영마을 2단지 지하주차장 누수발생, 2012년 3월>

본 사건에서 방수시공비 3~4억 원에 비해 누수보수 비용은 45억 원이 투입되었다. 지하수의 상시 영향을 받는 지형에는 주동통합형의 대형 지하 구조물을 설계함에도 불구하고 외방수를 실시하지 않고 유도배수로를 설계함에 따른 대규모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사점) 이 사건은 누수로 인해 당초의 시공비보다 10배 이상의 보수비용이 발생한 경우로 보험가입 금액이 너무 과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누수 발생에 따른 지하구조물 열화가속으로 긴급구조안전 진단이 실시되었으며, 당초 방수 시공비에 비해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에 10배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현재 용역대가는 통상적으로 설계는 공사금액의 3%, 감리는 5% 이하이기 때문에 건축사는 설계·감리비용만 보험이 가입되어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단적인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건축사 입장에서는 공사비의 3% 수준의 설계 손해배상보험을 5% 수준의 감리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피해액 45억원 이라는 감당하기

곤란한 엄청난 부담을 개인적으로 안아야 했다.

<사례 2: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지상1층, 사용 중), 2014년 2월>

본 사건으로 10명이 사망하고 약 100명이 부상을 당했다. 본 사건의 원인으로는 먼저 이상기후에 의한 폭설(습설, 단위중량 : 일반 눈의 3.0배)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로, 지붕판넬과 중도리의 스크류 접합이 약 50% 정도 누락되어 주골조를 횡지지하는 중도리의 파괴이다. 셋째, 철골 주골조의 사용강재가 부적합 강재로서 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구조도면에 접합상세, 사용강재의 강종, 주골조 부재의 치수 등 중요 사항이 누락되는 등 구조도면이 매우 부실하였기 때문이다.

(시사점) 본 사건은 공사 완공 후에 설계 등의 하자로 인한 건축물의 하자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처리가 곤란함을 보여준다. 실제 사건에서는 건축주가 완공 이후 용도변경을 통해 구조물을 변화시켜 건축주와 건축사가 분쟁을 하기도 했지만, 손해배상은 전혀 받을 수가 없었다.

<사례 3: 인천지하철 공사장 싱크홀 발생, 2013년 2월>

본 사건은 건축물 관련 사건은 아니지만 대형 건축물 공사에서도 똑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인천 검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지하철 공사장 지반이 20m 정도 내려앉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깊이 26m, 세로 12m, 가로 11m의 싱크홀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싱크홀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시사점) 이 사건은 안전사고 발생 시 제3자의 인적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적 사고 발생 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등 영향이 큼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2015년 건설기술진흥법 상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의 담보범위를 ‘목적물 및 제3자의 손해’로 인적손해까지 포함시켰다. 하지만 건축사법에서는 아직 인적 손해를 담보하지 않는 손해배상제도가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 4: 부산 공장 설계·감리 오류로 인한 재시공, 2013년>

본 사건은 당초 공장 건축주가 요구한 철골 기둥재 높이보다 설계·감리자가 설계한 높이가 낮아 공장 내에 크레인 설치 불가능하게 되자 철골재를 연장한 사례이다. 이때 건축주는 철골재의 연장에 따르는 비용 1.1억원 중 6천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하였다.

(시사점) 건축주가 요구했던 크레인 설치 높이 확보를 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과실이 명백하기에 손해사정 후 과실상계 비율은 건축주 10%, 설계자 70%, 감리자 20%로 합의되어 인정손해액은 6,086.3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8,300만원까지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에 자기부담금은 각각 설계자 66.4만원, 감리자 16.6만원에 불과하였다.

<사례 5: 대구 교육연구시설 주차설비 설계오류, 2014년>

본 사건은 감리사무소에서 PIT층의 철근배근공사의 감리업무 중 기계식 주차설비의 도면을 확인한 결과 PIT층의 높이(1.8m)가 기계식 주차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높이(2.3m)보다 낮게 설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사건으로 기계식 주차설비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구조변경공사비가 발생한 사건이다.

(시사점) 감리자는 애당초 설계자로부터 기계식 주차설비관련 도면이 누락된 설계 도서를 납품받았으므로 과실이 없으며 100% 설계자의 과실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1.1억원까지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설계자는 인정손해액 2,680만원 중 자기부담금 110만원만을 부담하였다.

위의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는, 사례1은 피해액이 보상한도를 엄청나게 초과하여 건축사의 부담이 막중했음을 보여준다. 사례2는 보상기간이 완공까지로 이후의 사고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사례3은 담보범위가 재산상의 손해로만 국한되어 인적 사고에는 전혀 대응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나머지 사례들은 건축물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자기 부담금만 부담하고 나머지 보상액은 모두 공제조합이 배상하여 건축사의 피해는 미미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3.3 전문가 심층조사 결과 분석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건축사공제조합, 건설용역공제조합,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건축업체 등으로 구성된 총 6인의 전문가²⁾들이 심층조사에 참여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주관식 형태의 질문과 논의로 이루어졌다. 주관식 항목이 사전에 이메일로 전달되어 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는 시간을 준 뒤, 전문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논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설문문항은 건축사 손해배상보험 관련 문제점과 이슈 도출, 건축사 손해보험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본적 자료와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여 기본 틀을 잡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주요 문제점과 이슈, 개선방향 등을 점검한 뒤, 기본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심층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조사결과 주요 내용을 종합·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사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가입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으며, 반면 이러한 특징으로 만약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엔지니어링진흥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건설용 손해배상보험에 비해,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은 보험체계나 제도적 장치 측면에서 미진한 형편이다.

셋째, 안전사고에 대비한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들은 보험료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요율을 인상하지 않으면서 보험기간, 담보범위 등을 확대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건축사보험의 사고율이 높지 않으므로 탄력적인 운용의 여지는 있다.

넷째,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가입율의 제고를 위한 정부의 규제 강화는 자칫 관련자들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일부 건축사들은 1인 사무소 등을 운영하고 있어 보험료 납부 자체가 큰 부담일 수도 있다.

다섯째,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연간보험 형태의 전문가 보험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연간보험방식은 포괄계약에 의하여 1년간의 연간보상한도액을 정하고 그에 따른 연간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하여 구간보험방식은 특정 공사 등 개별사안별로 개별가입계약을 체결하며 공사기간 등 개별사안의 종료 시까지 총보상한도액을 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사업별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므로,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은 구간보험 형태라 할 수 있다. 건축사 및 설계건축산업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보험료 등의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연간 보험형태의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종합해보면, 건축사 공제조합 등은 건축사보험의 필요성과 가입 확대를 강조한 반면, 건축업체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건축사의 보험료 부담 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은 보험체계나 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연간 보험방식의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건축사 매출액의 큰 변동성, 손해를 자료의 미비 등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곤란하다는 보험 관련 기관의 견해에 대부분 전문가가 동의하였다.

2) 공제조합, 보험회사 등은 실무책임자(부장급)이 참여하고 보험개발원은 오랫동안 보험 연구를 수행한 박사, 건축사는 업체 대표 2인이 참여하였다.

4. 건축사 손해배상보험 개선

4.1 보험가입을 제고

현재 장관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축사의 보험증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건축사 관련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업무 요령 고시에 넣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여타 관련 법규에서는 관련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업무요령을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보험(공제) 운영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건축사법에서도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고시’ (안)을 만들어, 제4조에서 보험증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2 보험가입금액 현실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최소한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하여 보상한도 금액을 최소한 10%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총공사비의 10% 수준을 보상한도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이상의 보상한도를 건축주가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추가 보험료 산정을 통해 보상한도를 늘리고 있다. 프랑스 등 유럽의 경우 20%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배상능력 확보를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용역목적물 전체가액의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10%로 하고 효과 분석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보상한도를 높일 경우 보험요율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건축사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요율 인상 없이 보상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최근 수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손해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보험요율 인하 요인이 있다. 이 재원을 보험가입금액 상향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경우 이러한 보험요율 인하요인을 활용하여 보험 부보범위를 제3자의 인적손해까지 확대한 바 있다. 즉, 2015년 7월 24일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령을 통해 제3자 인적손해에 대한 책임을 요율인상 없이 추가로 담보한 바 있다.

4.3 보험기간 확대

설계와 관련한 타 법규의 사례를 살펴보면,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의 상품은 관련법에 의해 완공 후 1년까지를 보험 가입기간으로 하고 있으나, 여타의 경우는 완공시점까지만 보험기간으로 하고 있다<Table 4>.

Table 4. Related legislations for terms of policy

Act	Contents
Electric technology management act	From beginning date to completion date of construction of power facilities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From beginning date to 1 year after completion of construction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Certified Architects Act	From beginning date to completion date of construction

보험기간을 완공 후 1년까지로 연장하여 설계 과실에 의한 사고의 배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계 하자에 의한 부실은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부분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건축사공제(보험)의 보험기간은 완공 후 1년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공 이후 1년 정도 사용이 된 건축물은 건축주에게도 어느 정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건축주가 배상책임을 1차로 부담하고 설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부분은 구상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프랑스의 경우처럼 건축주의 보험회사에서 1차 배상을 한 후에 시공업자와 설계업자 등 관련자의 보험회사 간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도 있다.

4.4 보험범위 확대

여타 관련법에서는 제3자의 재산상 손해를 담보범위로 명시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제3자의 인적손해까지 포함하고 있다<Table 5>.

Table 5. Related legislations for compensation limits

Act	Contents
Electric technology management act	Collateral damage of the object or the 3 rd party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Collateral damage of orderer or the 3 rd party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Collateral damage of the object or the 3 rd party(including casualty)

건축사법에서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세한 운영 사항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보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담보범위를 제3자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인적손해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기술진흥법 상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의 담보범위는 ‘목적물 및 제3자의 손해로 인적손해까지 포함하고 있다(2015년 개정 시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제3자의 인적손해를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하면서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

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 고시 제6조제3항에서 매 사고 당 보상한도를 공제 가입금액의 100분의 1과 5억 원 중 많은 금액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인적 사고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점을 감안하여 국가계약법에 의한 시공 부문 보험의 경우도 제3자 보상에 인적 피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4.5 보험료 할증을 통한 페널티 부과

부실설계자의 사고실적을 보험회사와 각 조합 간 공유하고 의무적으로 할증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하면 부실설계를 한 설계자(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에게 보험료 할증을 통하여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손해보험사와 공제기관(건축사공제, 엔지니어링공제 등) 등 각 취급기관이 사고이력이 있는 건축사에 대해서는 공통된 할증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고 보험업체간 사고실적의 공유 시스템 등 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5. 요약 및 결론

건축사법에서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건축물의 사고에 대비한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대부분의 건축사들은 규모 및 매출에서 영세하여 보험료 자체가 부담이 되므로, 가입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건축사 손해배상보험 가입율을 제고시켜야 하지만,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건축사들의 현실도 감안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설계·용역금액으로 한정되어 있는 손해보험의 한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보장 기간이 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완공 후 1년까지로 연장하여 설계 과실에 의한 사고의 배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담보범위를 제3자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인적손해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험업체 간 사고실적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료에 대한 할증 및 할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1년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이 도입된 이후 그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최초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충분한 계량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이 2011년부터 법제화된 관계로 충분한 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건축사 손해배상보험 실적, 사고율, 손익률 등에 대한 충분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보다 세

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간 보험 형태의 건축사 손해보험의 도입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현재 우리의 여건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보험형태가 건축사 현실에 더 유리한지 또 만약 도입이 필요하다면 어떤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등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8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 연구는 본인이 참여한 국토교통부(2016)의 『건축물 안전 관련 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발전시킨 것입니다.

References

- Jo, Y. J. (2003). "Study on the Contractor's Defects Liability at a Traditional Contract Type in Public Works," *Ph.D. Thesis*, Seoul City University.
- Kim, M. S. (2014). "An Analysis on Expanding Construction Insurance and Estimating Necessary Budget,"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5(5), pp. 53-62.
-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2013). *A Study on Improving Strategies of Construction-Engineering Insurance*, Engineering Financial Cooperative.
- Lee, E. S. (2010). "Improvement Ways of Construction Insurance Scheme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Korea,"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Lee, Y. H., and Choi, J. H. (2011).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Guarantee System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JCEM, 12(3), pp. 53-62.
- Park, G. H. (2005).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Construction Insurance Regulations," *Master Thesis*, Chungang University.
- Park, S. G. (2006). "Le développement de l'assurance obligatoire de responsabilité des constructeurs en droit français," *The Journal of Comparative Private Law*.

- Song, D. H., and Choi, I. S. (2001). "Study on the activation of construction insurance regulation."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Structure & Construction*, 17(12). pp. 179-189.
- Song, Y. H., and Lee, H. D. (2003).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Liability Insurance in Korea." Hongik University, Hongik Faculty Journal 13.
- Yeo, H. Y. (2010). "Étude sur la responsabilité des constructeurs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Hongik Law Review.

요약 :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과 사례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건축사법에서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사보험의 현황을 분석하여 나온 문제점들에 대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사 손해배상 배상 가입율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장관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축사의 보험증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건축사 관련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업무요령 고시에 넣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보험가입금액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배상능력 확보를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용역목적물 전체가액의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로 보험기간을 완공 후 1년까지로 연장하여 설계 과실에 의한 사고의 배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설계 하자에 의한 부실은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부분 파악이 가능하므로, 보험기간을 완공 후 1년까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보험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담보범위를 제3자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인적손해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험업체 간 사고실적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료에 대한 할증 및 할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건축사 손해배상보험, 가입율 제고, 보험금액 현실화, 보험범위 확대
